

2024년도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검 토 보 고

1. 제안경위

- 2024년도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운용계획안은 2024. 5. 27. 서울특별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4. 5. 30. 회부됨.

2. 제안이유

- 2023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 등 조정으로 2024년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기금운용계획상 지출계획의 '재무활동' 금액이 당초보다 20%를 초과하여 변경되었음.
- 이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의 규정1)에 따라 2024년도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3. 주요내용

- 전년도(2023년) 결산에 따라 수입계획상 '예치금 회수' 금액이 당초 14억 2천 3백만원에서 18억 2천 8백만원으로 4억 5백만원 증액하였고, '보조금 반환수입' 금액이 당초 8백만원에서 1천 5백만원으로 7백만원 증액하였음.

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 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2. 「재해구호법」 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

- 예치금 회수 : '타지자체 재해재난구호지원' 미집행(2억 2백만원), 일반사업비 및 기본경비 미집행(1억 1천 8백만원), 이자수입 증가분(8천 1백만원), 보조금 반환수입 증가분(4백만원)
- 보조금 반환수입 : '타시도 연계 MICE 공동마케팅 운영 사업 집행잔액 증가분(6백만원), '청소년 역사문화교류' 사업 집행잔액 증가분(1백만원)

○ 이에 따라 지출계획상 '재무활동' 금액이 당초 7억 5천만원에서 11억 6천 2백만원으로 4억 1천 2백만원 증가하여 55% 변경되었음.

〈 수입·지출계획 변경내용 〉

〈수입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증 감
계	2,811	3,223	412
일 반 회 계 전 입 금	1,300	1,300	-
이 자 수 입	80	80	-
보 조 금 반 환 수 입	8	15	7
예 치 금 회 수	1,423	1,828	405

〈지출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증 감
계	2,811	3,223	412
비 용 자 성 사 업 비	2,058	2,058	-
기 본 경 비	3	3	-
예 치 금	750	1,162	412

※ 변경 사유 :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내역 반영

4. 검토 의견

- 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023회계연도 결산 결과 발생한 여유자금 4억 1천 2백만원(예치금 회수 4억 5백만원, 보조금반환수입 7백만원)을 ‘수입계획’에 반영하고, ‘지출계획’에 예치금(4억 1천 2백만원, 수입계획과 연동)을 증액하려는 것으로, 결산결과를 기금운영에 반영하고자 변경안을 제출한 것임.

〈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

(단위 : 백만원)

정책사업 / 단위사업	조정내역		
	당초(A)	변경(B)	증감(B-A)
시정현안 협업기반 조성	2,058	2,058	-
지방자치단체 교류협력강화	2,058	2,058	-
재무활동(행정국 대외협력과)	750	1,162	412
보전지출	750	1,162	412
행정운영경비(행정국 대외협력과)	3	3	-
기본경비(대외협력기금 국내협력계정)	3	3	-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에서는 기금운영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를 초과하여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하고 있는바,
 - 동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출계획중 ‘재무활동(예치금)’ 금액을 당초 지출계획보다 55.0%(4억 1천 2백만원) 증액 변경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안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범위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안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에 사용할 수 없다.

1. 예측할 수 없는 소요가 발생한 경우
2. 긴급한 소요가 발생한 경우

3. 기존사업을 보완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2. 「재해구호법」 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

○ 동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의 주요내용은 2023 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한 여유자금을 예치금으로 편성하여 기존에 운용 중인 기금 규모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보임.

○ 다만, 예치금 회수금액 증가는 ‘타지자체 재해재난구호지원’ 미집행(202백만원), 일반사업비 미집행(118백만원) 등에 따른 것으로, 내실있는 사업추진을 통한 집행잔액 최소화로 효율적인 기금운용이 될 수 있도록 행정국의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사업비 미집행 현황 〉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집행 잔액	미집행 사유
합 계	3,355	3,035 (90.5%)	320	
서울-타시도간 스토리여행상품 개발운영 (관광정책과)	150	149 (99%)	1	◦ 용역추진에 따른 집행잔액
청소년 역사 문화교류사업 (청소년정책과)	360	324 (90%)	36	◦ 일부 지자체 프로그램 기간 및 인원 축소
타지방자치단체 재해재난구호지원 (대외협력과)	1,000	798 (80%)	202	◦ 타 지자체 재해재난 발생 시 복구비 지원을 위한 예비 비적 성격의 사업으로 사전에 불용예상액 산정 곤란
서울정책연수 프로그램 운영 (대외협력과)	30 (200)	26 (86%)	4	◦ 연초 계획 대비 지자체 수요 감소
타시도 연계 MCE 공동마케팅 운영 (관광정책과)	250	250 (100%)	0	◦ 위탁사업으로 전액 집행
대학생 지역 상생 관광 콘텐츠 개발 및 홍보사업 (관광정책과)	65	55 (85%)	10	◦ 용역추진에 따른 집행잔액

사 업 명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집행 잔액	미집행 사유
랜선 나눔 캠퍼스 (대외협력과)	485	448 (92%)	37	◦ 대학생 멘토 중도포기자 발생에 따른 활동비 잔액 및 우수 멘토-멘티 시상 등 성과공유회 미개최
동해·울진 산불피해지 복구지원 (자연생태과)	500	473 (95%)	27	◦ 공사비 낙찰차액
2030 세계박람회 유치 홍보지원 (대외협력과/미디어콘텐츠산업과)	41	41 (99%)	0	◦ 물품구입비 집행잔액
지역관광 안테나숍 설치·운영 (관광정책과)	300	300 (100%)	0	◦ 보조사업으로 전액 집행
순천만 국가정원 내 서울정원 재조성 (조경과) ※ 2022년도 사고이월 사업	174	171 (98%)	3	◦ 공사비 낙찰차액

○ 또한, 예치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사업별 지출 일정을 감안하여, 이율이 높은 정기예금에 최대한 예치하여 이자수입을 극대화하는 지속적인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예치금 관리현황 (2024. 5. 31. 기준)

○ 시금고 예치 현황

(단위 : 천원)

총 액	시금고 예치금	
	공공예금	정기예금, MMDA
2,901,708	51,708	2,850,000

○ 세부 내역

(단위 : 천원)

계정과목	금 액	기 간	이 율
공공예금	51,708	-	2.02
정기예금	1,000,000	12개월	4.22
	500,000	6개월	3.90
MMDA	1,350,000	수시입출금	3.55
합 계	2,901,708		

- 본 기금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교류 및 협력을 위한 것이나, 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구호 및 문화교류 등에 대부분의 사업예산이 편중된 것으로 보이고, 기금재원을 활용한 사업의 다양성도 부족한 것으로 사료되는바,
 - 타 지방자치단체의 안전강화, 교류확대 등을 통한 시장 경쟁력 지원 및 지역발전 등 본 기금의 고유목적에 부합하고, 장기적이며 구체적인 사업의 발굴 및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전문위원	정찬일	입법조사관	이태기
------	-----	-------	-----